

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연월일	2021. 12. .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안연월일 : 2021. 12. .
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등 지방의회 관련 법규가 일괄 개정(2022. 1. 13. 字 시행)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용 조문 및 회기 소집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인용 조문 수정(안 제1조, 제4조, 제5조)

나. 회기 소집 내용 수정(안 제3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, 제54조

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4조, 제45조,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4조”를 “제53조, 제54조, 제56조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 때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. 다만,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”를 “정례회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41조제1항”을 “법 제49조제1항”으로, “법 제134조”를 “법 제150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27조”를 “법 제142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, 제45조,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53조, 제54조, 제56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회기) ① (생략) ②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.	제3조(회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 때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. 다만,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제4조(집회일)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	제4조(집회일) 정례회----- ----- -----.

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 1. 2. (생략) 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41조제1항</u>의 규정에 의한 행 정사무감사 실시와 <u>법 제134조</u> 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안건을 심의· 의결한다.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12 7조</u>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 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③ (생략)	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 ① ----- <u>법 제49조제1항</u>----- ----- <u>법 제150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<u>법 제14 2조</u>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53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54조(임시회)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